

##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에 관한 처분기준(제18조 관련)

### 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7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라.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표시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인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의 표시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.
- 마. 생산자집단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처분을 하고, 구성원이 소속된 생산자집단에 대해서도 구성원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되,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처분을 받는 구성원의 처분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(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)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한다.

### 2. 개별기준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 법조문         |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1차 위반       | 2차 위반       | 3차 위반       |
|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조 제1항제1호   | 인증취소        | —           | —           |
| 나.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조 제1항제2호   | 표시정지<br>1개월 | 표시정지<br>3개월 | 인증취소        |
| 다. 전업(轉業)·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     | 법 제8조 제1항제3호   | 인증취소        | —           | —           |
| 라.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·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8조 제1항제4호   | 표시정지<br>1개월 | 표시정지<br>3개월 | 인증취소        |
| 마.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 | 법 제8조 제1항제4호의2 | 시정명령        | 표시정지<br>1개월 | 표시정지<br>3개월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
| 바.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우수<br>관리인증의 변경승인을 받지<br>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| 법 제8조<br>제1항제5호 | 표시정지<br>1개월 | 표시정지<br>3개월 | 인증취소 |
| 사.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기간<br>중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<br>한 경우              | 법 제8조<br>제1항제6호 | 인증취소        | —           | —    |